

수신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등 안내 협조요청

1. 귀 포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목)부터 시행되나,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우리 실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회원사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인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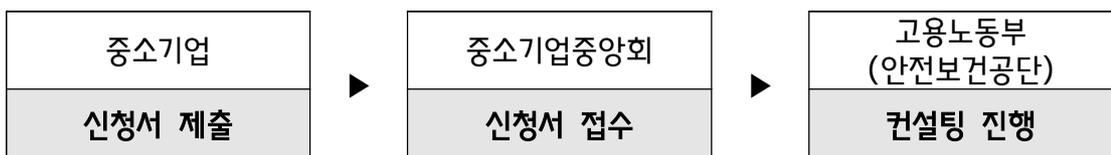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2인 1조)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 **신청기간 : '22. 4. 14(목) ~ 4. 22(금) (9일간)**

- **지원절차 : ①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smsfes@kbiz.or.kr / (팩스)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안내 예정(선정 시)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4.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koshasafety.co.kr)」를 새로 구축하여 다양한 설명자료와 교육영상 등을 한번에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기업용) 1부.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자료 1부.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보도자료 1부.
4.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방법 1부.
5.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1부. 끝.

중소기업중앙회장

수신자 연합회(전체), 연합회소속(전체), 전국조합(전체), 사업조합(전체), 연합회소속 사업조합(전체), 지방조합(전체), 특별회원(전체), 지역연합회(전체), 관련단체(전체)

대리 노민규

전결 01/24
실장 양옥석

협조자

시행 인력정책실-53 (2022.01.24) 접수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www.kbiz.or.kr

전화 02-2124-3273 전송 02-786-1892 / mkroh@kbiz.or.kr / 비공개